

## 지역인재 의무채용

- 관련근거 : 『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』 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
- 채용인원이 6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27% 의무채용 적용
  - 대상 : 최종학력 기준(대학원 이상 제외)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<sup>1)</sup> 졸업(예정<sup>2)</sup>)자
- 우대내용 :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(27%)미달 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(단, 커트라인 총점 -5점 미만자는 제외)
  - ex) 필기합격자 커트라인 총점(직업기초능력+직무수행능력+가점) 75점일 경우
  - ☞ 채용 목표인원 미달 시 70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
- 추가합격자 선정기준
  - (필기전형)직업기초능력(50%)+직무수행능력(50%)+가점 합산 고득점순
  - (면접전형)직업기초면접(50%)+직무수행능력(50%)+가점 합산 고득점순

※ 지역인재 추가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
- 지역인재 해당자는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 학교 졸업(예정)자임을 입사지원시 반드시 입력(체크)하여야 하며, 미입력 시 우대불가

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단, 사이버대학은 제외)

2) 접수마감일(2023.4.10)기준 졸업(예정)자에 한하여, '대학졸업예정자'란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면접전형당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뜻함